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동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0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31일
발 의 자 : 강동길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순선, 김제리, 김화숙,
노식래, 문병훈, 이경선,
이영실, 이현찬, 임종국,
추승우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근거에, 출자·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한 「지방재정법」을 추가하여, 모든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,

출자·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며,

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임원 등의 임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·출연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근거법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를 추가 하고자 함(안 제1조).
- 나. 조례 적용 대상 출자·출연 기관을 전(全)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(안 제2조).
- 다.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안 제3조제2항 신설).
- 라. 출자·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함(안 제22조의3 신설).
- 마. 출자·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22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, 「지방재정법」 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”을 “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출자·출연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①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출자·출연 사무명
2. 출자·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출자·출연 사무 내용
4. 출자·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7.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
8. 기타 출자·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
9. 출자·출연 기관 성과보고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</u>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정의) 이 조례에서 "출자·출연 기관"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출자하거나 <u>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조직·인력 운용) <u>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</u>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제18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정의) 이 조례에서 "출자·출연 기관"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출자하거나 <u>출연하는 출자기관</u>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조직·인력 운용) ① <u>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</u>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출자·출연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</u></p>

	<p><u>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<신 설> <u>제22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신 설> <u>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①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출자·출연 사무명</u> <u>2. 출자·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</u> <u>3. 출자·출연 사무 내용</u> <u>4. 출자·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</u> <u>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/u> <u>7.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</u> <u>8. 기타 출자·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</u> <u>9. 출자·출연 기관 성과보고서</u>
--	--